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신종갑 의원)

의안 번호	18-92
----------	-------

발의년월일 : 2018. 10. .

발 의 자 : 신종갑, 강명숙, 권영숙,
김영미, 김진천, 이필레,
장덕준, 정혜경, 서종수,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

1. 제안이유

-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과 그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구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을 위해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그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 사업자, 구민의 책무(안 제3조~안 제5조)
- 다.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시행(안 제6조)
- 라.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운영 및 예산 지원(안 제7조~안 제8조)
- 마. 구민의 참여 및 교육, 홍보 실시(안 제9조~제10조)

3. 관계법령

가. 「환경정책기본법」 제8조

나. 「환경보건법」 제20조

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라. 「지방자치법」 제22조

4. 조례안 : 붙임

5.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6. 기타사항

가. 입법예고 : 2018. 10. 12. ~ 10. 18.

서울특별시 마포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자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

-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μm) 이하인 먼지

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대기오염 측정망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오염 측정망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

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구민의 참여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구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거나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18.1.18.] [법률 제14532호, 2017.1.17., 타법개정]

제8조(환경오염 등의 사전예방)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물질 및 환경오염원의 원천적인 감소를 통한 사전예방적 오염관리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사업자로 하여금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환경보건법

[시행 2018.4.25.] [법률 제14931호, 2017.10.24., 일부개정]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유해 인자로 인한 국민의 건강피해를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6.20.] [법률 제15274호, 2017.12.19., 일부개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대기관리권역(大氣管理圈域)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사회적·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세부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 방 자 치 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일부개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령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